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사업소세를 면제한다."를 "사업소세(재산할)를 면제하고,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(종업원할)를 면제한다."로 한다.

부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 2 조(과세면제)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·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·골프장·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2.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3.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4.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	제 2 조(과세면제) ……사업소세(재산할)를 면제하고,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(종업원할)를 면제한다. ……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 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"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 제4조제1항의"를 "서울특별시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"로 한다.

부칙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"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" 폐지후부터 적용한다.

(다음 「페이지」에 계속)